

이 설명서는 본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판매사가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상품제공기관이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상품별 개별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상품 정보

상품 유형	이율보증형보험(GIC)
상품명 (상품제공기관)	(무)교보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교보생명)
상품 주요 내용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기 위한 상품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 확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이율	이율보증형 상품의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 www.kyobo.com ▷공시실 ▷상품공시실 ▷퇴직연금공시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 ▷자사제공상품 ▷이율보증형 보험(신탁제공용) • 매월 공시되는 적용이율은 해당 월의 공시금리이며, 실제 적용이율은 이율보증형 상품에 투입되는 시점의 공시금리가 적용되므로, 적용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에 관한사항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 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50%]
특별중도해지	아래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해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 9.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10.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 11.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승인 혹은 승인취소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납입된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2/3/5년
이자/수익 지급시기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됩니다.	
만기 시 처리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회사가 단위보험을 자동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DC,IRP제도 가입자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프로세스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소가입금액	제한 없음	
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용자 및 가입자	
계약해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 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예금자 보호여부		해당됨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해당되지 않음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가입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입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상품제공기관이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상품별 개별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예금자보호여부	DC/IRP 	해당됨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가입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입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연락금지요구권		고객은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방문판매인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할 경우, 진행 중인 방문 판매는 즉시 종료됩니다.) □ 연락금지요구권 행사 방법 및 절차 - 당사 홈페이지 (MY교보>나의정보>내정보설정>마케팅활용 동의철회) - 고객센터(080-700-1112, 3번) - 고객PLAZA 내방 - 연락중지청구시스템 (www.donotcall.or.kr) 접속>휴대전화 인증>두넛콜 등록